

「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5. 2. 16. 개정 판 (시행 2015. 3. 1.) → 2016. 2. 29. 개정 판 (시행 2016. 3. 1.)

바뀜 1 · 신설 1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4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05/compare?from=515&to=518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6:16:18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위원장, 교수학습개발부장을 서기로 하고, 위원으로는 교수학습개발팀장, 교무부장, 정보전산원장, 교수 2인(임명직)으로 구성한다.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<전문개정 2013-02-25><전문개정 2015-02-16>	제5조(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(위원장), 교수학습개발센터장(서기), 교수학습개발팀장, 교무부처장, 교양대학장, 교양대학부학장, 정보전산원장, 교수(2)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-02-29>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<전문개정 2013-02-25><전문개정 2015-02-16>
<신 설>	제7조(기능) 다음 각 항목을 심의한다. <신설 2016-02-29> 1. 교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2. 학습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3. 이러닝 운영에 관한 사항
제7조(재정) 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재정은 교비, 정부지원금,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3-02-25>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	제8조(재정) 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재정은 교비, 정부지원금,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3-02-25>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제8조(이용)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3-02-25> ① 학생의 수업 ② 교수의 강좌제작 ③ 직원의 교육 ④ 기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	제9조(이용)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3-02-25> ① 학생의 수업 ② 교수의 강좌제작 ③ 직원의 교육 ④ 기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
제9조(회계) 회계와 예.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. <개정 2013-02-25>	제10조(회계) 회계와 예.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. <개정 2013-02-25>
제10조(운영세칙) ① 교수법, 학습법 e-Learning, 글쓰기, OCW(Open Course Ware)의 운영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4-04-14> ②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-02-25>	제11조(운영세칙) ① 교수법, 학습법 e-Learning, 글쓰기, OCW(Open Course Ware)의 운영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4-04-14> ②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-02-25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는 교무처장(위원장), 교수학습개발센터장(서기), 교수학습개발팀장, 교무부처장, 교양대학장, 교양대학부학장, 정보전산원장, 교수(2)으로 구성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기능) 다음 각 항목을 심의한다.

1. 교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
2. 학습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
3. 이러닝 운영에 관한 사항

제7조를 제8조로 한다.

제8조를 제9조로 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 한다.

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